

1999. 3. 20.

## 제정및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-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
-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
-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총무위원회

# 제정및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조 례 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자
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	'99. 3.11	'99. 3.11	'99. 3.16	'99. 3.16	총 무 담당관
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 운영조례안	'99.3.15	'99. 3.15	“	“	사 회 진흥과장
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	'99. 3.11	'99. 3.11	“	“	세 정과장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가.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

#### 1) 제안이유

○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·근무능을 향상·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# 2) 주요골자

○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

- 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함.
-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6급이하 일반, 연구, 특수기술, 직  
 열, 기능, 고용, 별정직 공무원으로 함.
  -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·감독의 책임이나 인사·예  
 산·경리·물품출납·비서·기밀·보안·경비·자동차운전 등에  
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음.
  - 협의회는 협의사항은 근무환경 개선·업무능률 향상·고충처리  
 등으로 하고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  
 위원을 선임하도록 함.
  - 소속기관의 장은 협의에 성실히 임하고 협의사항의 이행에 최대  
 한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  
 무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.

## 나.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청소년의 각종문화 행사와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하여 자아의 발  
 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 
 지원하고자 함.

### 2) 주요골자

-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
 에게 위탁운영(안 제7조)
-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수 있다.(안 제9조)
- 수련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(안 제14조)
-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및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  
 한 감면(안 제16조)

## 다.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내용정리
-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함.
- IMF관리체제하의 침체된 주택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함.
- 농공단지내 휴·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기 위함.

### 2) 주요골자

- “승용자동차에”를 “자동차에”로 정리
-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
  -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퍼센트를 경감한다.
  - 1.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
  - 2.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
-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
  -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,000분의 3으로 함.
- 농공단지내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신설
  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한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 가.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

- 이 조례는 1998년 2월 24일 제정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의 공무원이 근무환경개선·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
- 총 16개 조문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내용은 협의회설립범위와 협의회와 설립기관의장과의 협의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협의사항은 이행에 노력하도록 함은 물론
-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하고 설립기관의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도록하여 기관장과의 대화의 폭을 넓혀 고충처리 등을 직접 해결할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할수 있음.
-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근무환경개선·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국한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안임.

## 나.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
- 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이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.
- 이에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
  -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과 관리책임 등 내용을 명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으며
  -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운영방안 수립과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음
  - 사용자에게 사용허가시 사용료 납부와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람료 총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토록하여 시설운영비에 충당토록 하였음.
  - 또한 납부된 사용료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예정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할시 사용료의 80퍼센트를 반환하도록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음.
-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과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## 다.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-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수도 있고 불균일 과세를 할수 있음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음
-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하는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각 시·군에 일괄통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려고 하는 것으로서
- 외국인 투자자·주택건설업자·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인 세세혜택을 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임.

## 4. 질의 · 답변 요지

### 가.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

#### [질 의]

○언론에 기 보도가 되었으며, 2차 공무원 구조조정도 있고 한데 꼭 필요한 것인지?

☞ 답 변 : 단체 행동권은 없으며 근무환경 개선등 경미한 사항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별면담 보다는 공신력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함.

#### [질 의]

○공무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는지?

☞ 답 변 : 없음.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협의회를 설립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됨.

#### [질 의]

○6급이하 공무원중 기능직, 일용직도 해당 되는지?

☞ 답 변 : 정규직에 한함.

#### [질 의]

○공무원들 자체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꼭 필요한 공무원은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 권의와 기능이 무의미하다고 보는데?

☞ 답 변 : 본 조례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유리하며 제외공무원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어 의견이 무시된 다던가 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봄.

#### [질 의]

○전국 자치단체중 본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?

☞ 답 변 : 파악한 적은 없으나 청주시 흥덕구와 상당구, 광주 광역 시로 알고 있음.

**[질 의]**

○ 공무원들이 협의회 설립을 원하고 있는지?

☞ **답 변** :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바로 설립될 것 같음.

**나.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**

**[질 의]**

○ 무보증으로 위탁 3년인데 지금까지 위탁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적은?

☞ **답 변** : 자금지원은 없으며 현재 집기류를 구입중에 있음.

**[질 의]**

○ 위탁업체의 적자 운영시 시의 대책은?

☞ **답 변** : 현재는 국·도비등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 서도 특성화 사업비 2억을 지원 요청해 놓고 있음.

**[질 의]**

○ 제15조에 20/100이란?

☞ **답 변** : 수련원에 납부하는 것임.

**[질 의]**

○ 관람료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?

☞ **답 변** : 시설사용료가 대부분이며 관람 요금은 추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.

**[질 의]**

○ 제5조의 공무원을 명시할 수 있을텐데?

☞ **답 변** :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승인 사항임.

**[질 의]**

○ 특성화 사업이란?

☞ **답 변** : 프로그램 제작비임.

**[질 의]**

○ 국비보조금의 보조 방법은?

☞ **답 변** : 시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사업비 별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.

**다. 충주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**

**[질 의]**

○ 제4조에 “자동차”의 범위는?

☞ **답 변** : 승용차는 2,000CC이상은 감면대상이 아니고 화물차는 적재량 1t이하가 대상임.

**[질 의]**

○ 주택건설업자가 준공전 부도로 인해 도피한 경우에 해당 여부는?

☞ **답 변** : 부도가 정리된후에 해당됨.

**[질 의]**

○ 농공단지 휴·폐업중인 경우에는?

☞ **답 변** : 휴·폐업 업체를 구입해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됨.

**[질 의]**

○ 제24조의3 “기준일로부터 7년간”으로 정한 사유는?

☞ **답 변** : 행자부의 준칙안에 의함.

**[질 의]**

○ 장애인 소유차량 감면시 연간 세수액은?

☞ **답 변** : 2,100건에 2억 정도됨.

**[질 의]**

○ 장애인의 혜택 한계는?

☞ **답 변** : 장애인 본인 또는 보조자도 운전할수 있으며 필히 장애인이 동승하여야 함.

## 5. 심사결과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: 심의보류결정

나.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: 수정의결(별지)

다.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## 6. 붙 임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

나.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

다.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[별지]

□ 조례명 : 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

충주시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(지원)중 “시장은” 다음에 “경상경비를 제외한”을 삽입하고  
“비용의”를 “비용중”으로 하며 “전부 또는”을 삭제하고

제10조(수탁자의 의무) 제⑥항 다음에 제⑦항 “결산에 관한 사  
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“를 신설한다.

<수정안 대비표>

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지원) <u>시장은</u> 시설운영에 필요 한 <u>비용의</u> <u>전부 또는</u>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제8조(지원) <u>시장은</u> <u>경상경비를 제외</u> 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<u>비용중</u> 일부 를 보조 할수 있다.
제10조(수탁자의의무)①~⑥(생략) ( <u>신설</u> )	제10조(수탁자의의무)①~⑥(현행과같 음) <u>⑦결산에 관한 사항은</u> 규칙으로 <u>정한다.</u>